

광주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가단5434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성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수지, 정광태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13. 소외 C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2012. 3. 28.부터 대출잔액 9,706,868원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568963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28. ‘C은 원고에게 25,779,266원 및 그 중 9,706,868원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5. 4.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은 2017. 10. 30.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3/9 지분), 자녀인 E(2/9 지분), F(2/9 지분), C(2/9 지분)이 있다. 피고는 E, F,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11. 24. 접수 제201394호로 2017. 10.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피고는 2008.경부터 C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이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의 관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 경위, 당시 C의 경제상황이나 재산상태 및 피고의 위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2/9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부동산 목록

1. 광주 서구 G 대 125㎡
2. 광주 서구 G 지상
세멘벽돌조스라브층2층건주택
건평 1층 57.39㎡
2층 50.94㎡
부속건물 시멘벽돌조스라브층평가건 건평 1.62㎡ 끝.

